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49

발의연월일: 2020. 8. 21.

발 의 자: 강선우·김경만·황운하

안규백 · 이해식 · 서영석

맹성규 · 권칠승 · 김영호

박성준 · 서영교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, 현재 10개 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 R&D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.

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,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,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구기관,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, 정부의 R&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.

아울러,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연구 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등, 병원,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·개발·사업화,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, 유형·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1항제9호).
- 나.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(안 제15조).
- 다.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안제29조 신설).
- 라.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, 제31조 및 제34조 신설).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"산병연협력"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, 사업자단체, 직능 단체, 병원,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 을 말한다.
 - 가.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·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 구·개발·사업화
 - 나. 산업체, 사업자단체, 직능단체(이하 "산업체등"이라 한다)로의 보건의료기술 이전과 산업자문
 - 다. 인력, 시설·장비,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·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
- 10. "산병연협력의료기술지주회사"(이하 "의료기술지주회사"라 한다) 란 제29조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(지 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.
- 11. "자회사"란 병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의료기술

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.

제1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"지정"을 각각 "인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"를 "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,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·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2의 제목 중 "지정"을 "인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"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"을 "인증받은"으로, "지정을"을 "인증을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지정"을 각각 "인증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-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6개월

-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회사를 해산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 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정"을 "인증"으로 한다.

제17조 중 "지정된"을 "인증받은"으로 한다.

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,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하며, 제5장(제29조부터 제35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산병연협력의 촉진

- 제29조(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·운영)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 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 는 조직(이하 "의료기술협력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원의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 및 그에 필요한 조직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1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이 개설한 병원
- 2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- 3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- 4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
- 5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
-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- 2.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- 3.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- 4. 병원의 연구개발
- 5.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- 6.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
- 7. 창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
- 8.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⑥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.

- 제30조(의료기술지주회사의 설립·운영)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과 공동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의료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주식회사일 것
 - 2. 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
 - 3. 의료기술협력단(다른 의료기술협력단과 공동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포함한다. 이하같다)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,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
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 - ③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·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의료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.
 - ④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병원의 명칭과 의료기술지주회사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 - ⑤ 의료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31조(자회사의 설립 방식) ①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.
 -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.
 - ④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32조(이익배당의 사용제한) 의료기술협력단이 의료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9조제4항에 따른 업무와 병원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33조(직원의 겸직 및 휴직) ① 병원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.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34조(의료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료기술지 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 - 1. 제30조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- 2. 제30조제3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
- 3. 제32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제35조(준용규정)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, 주소, 등기, 재산목록, 이사,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,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, 제55조제1항, 제59조제2항, 제61조,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,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,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.
 -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산병연협력계약, 정관, 단장의 임면, 조직, 사업연도, 수입, 지출, 채무보증 등의 제한, 회계원칙, 연구원 등의 채용, 지식재산권의 취득·관리, 현물출자의 가치 평가, 자회사에 대한보증, 자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등에 관하여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·제3항·제4항, 제26조,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, 제31조제1항(제5호를 제외한다)·제2항(후단을 제외한다), 제32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6호·제8호, 제32조의2,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, 제36조의2제3항,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6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대학"은 "연구중심병원"으로, "산학연협력"은 "산병연협력"으로, "산학협력

단"및 "산업교육기관"은 "의료기술협력단"으로, "기술지주회사"는 "의료기술지주회사"로, "학교규칙"은 "병원규칙"으로, "교직원"은 "직원"으로 본다.

③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「상법」 제28조를 준용하고, 의료기술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상법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연구중심병원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의료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본다.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"산병연협력"이란 국가와 지
	방자치단체, 산업체, 사업자단
	체, 직능단체, 병원, 연구기관
	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
	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
	가.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
	지식・기술의 창출 및 확
	<u>산을 위한 연구·개발·사</u>
	<u>업화</u>
	나. 산업체, 사업자단체, 직능
	단체(이하 "산업체등"이라
	한다)로의 보건의료기술
	이전과 산업자문
	다. 인력, 시설·장비, 연구개
	<u>발 정보 등 유형·무형의</u>
	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
<u> <신 설></u>	10. "산병연협력의료기술지주회
	사"(이하 "의료기술지주회
	<u>사"라 한다)란 제29조에 따</u>
	른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하

② (생략)

제15조(연구중심병원의 <u>지정</u> 등) 제15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
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
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
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
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치과
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
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
규정에 따른 종합병원, 상급종
합병원,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
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
원으로 <u>지정</u>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보건의료기술의 사업화를
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
(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같
다)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
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
<u>다.</u>

- 11. "자회사"란 병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의료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.
- ②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소(연구중심병원의 <u>인증</u> 등)
①
<u>인증</u>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 는 경우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야 하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 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
-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⑥ 연구중심병원 지정·재지정 | 의 기준·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.
- 취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의료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-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 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,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갱신 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평 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| ⑤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 ·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 <삭 제>

제15조의2(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제15조의2(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) ① -----

-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<u>지정</u>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2. <u>인증</u> -----된 경우
- 3.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

②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u>0</u>	<u>ろ</u>
으=	
1	_
<u>인중</u>	

- 3. ----- 인증 -----
- 4.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-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 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6 개월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의 료기술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 회사를 해산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 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1. • 2. (생략)

제17조(연구중심병원의 지원)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<u>지정된</u>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·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,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 <신</th>
 설>

 <신</th>
 설>

725 (2102117)
인증
<u> 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연구중심병원의 지원)
인증받은
<u> </u>
제5장 산병연협력의 촉진
제29조(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
운영)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
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
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
업무를 관장하는 조직(이하
"의료기술협력단"이라 한다)을
설립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병원의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
무 및 그에 필요한 조직의 설
립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

- <u>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</u> <u>바에 따른다.</u>
- 1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 른 학교법인이 개설한 병원
- 2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- 3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- 4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 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 원
- 5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 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 병원
-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.
- ④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
 이행
- 2.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- 3.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

에 관한 업무

- 4. 병원의 연구개발
- 5.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- 6.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
- 7. 창업지원 등에 관한 업무
- 8.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을 표시하여야 한 다.
- ⑥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.
- 제30조(의료기술지주회사의 설립 ·운영)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병원의 의 료기술협력단과 공동으로 의료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 다.
 - ② 의료기술지주회사는 다음
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

<신 설>

지부렁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

- 1. 주식회사일 것
- 2. 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 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 3. 의료기술협력단(다른 의료기 술협력단과 공동으로 의료기 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에는 다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자본 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,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 과하여 보유할 것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- ③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·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의료기술지주회사은 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있다.
- ④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병원의 명칭과 의료기술

<신 설>

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⑤ 의료기술지주회사가 아닌
자는 상호 중에 의료기술지주
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
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1조(자회사의 설립 방식) ①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의료기술 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.
②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.

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 한회사로 한다.

④ 의료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2조(이익배당의 사용제한) 의 료기술협력단이 의료기술지주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9조제4항에

<신 설>

<u>따른 업무와 병원의 연구활동</u> 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33조(직원의 겸직 및 휴직) ① 병원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술지주 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.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 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한다.

제34조(의료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여 의료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- 1. 제30조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경우
- 2. 제30조제3항으로 정하는 업 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

- 3. 제32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 르지 아니한 경우

제35조(준용규정) ① 의료기술협 력단의 능력, 주소, 등기, 재산 목록, 이사, 해산 및 청산에 관 하여는 「민법」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, 제50조부터 제54조 까지, 제55조제1항, 제59조제2 항, 제61조, 제65조 및 제81조 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,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 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,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.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산병연협 력계약, 정관, 단장의 임면, 조 직, 사업연도, 수입, 지출, 채무 보증 등의 제한, 회계원칙, 연 구원 등의 채용, 지식재산권의

취득 • 관리, 현물출자의 가치 평가, 자회사에 대한 보증, 자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등에 관 하여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 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· 제3항 · 제4항. 제 26조,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, 제31조제1항(제5호를 제외한 다.) · 제2항(후단을 제외한다.). 제32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6 호 · 제8호, 제32조의2, 제33조 부터 제35조까지, 제36조의2제3 항,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 까지, 제36조의4제5항부터 제7 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대학"은 "연구중심병원"으로, "산학연협력"은 "산병연협력"으 로, "산학협력단" 및 "산업교육 기관"은 "의료기술협력단"으로, "기술지주회사"는 "의료기술지 주회사"로, "학교규칙"은 "병원 규칙"으로, "교직원"은 "직원" 으로 본다.

③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

	여는 「상법」 제28조를 준용
	하고,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자
	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
	있는 경우 외에는 「상법」을
	준용한다.
<u>제5장</u> 벌칙	<u>제6장</u> 벌칙
<u>제29조(</u> 벌칙) (생 략)	<u>제36조(벌칙) (현행 제29조와 같</u>
	흥)
<u>제30조</u> (과태료) (생 략)	<u>제37조</u> (과태료) (현행 제30조와
	같음)